

# 예 산 총 칙

201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| 805,000,000 | 24,150,000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| 632,000,000 | 18,960,000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| 173,000,000 | 5,190,000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| 36,000,000  | 1,080,000  |
|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     | 17,000,000  | 510,000    |
|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     | 19,000,000  | 570,000 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| 137,000,000 | 4,110,000 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 | 4,200,000   | 126,000    |
| 의료보호비특별회계        | 2,120,000   | 63,600    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 | 730,000     | 21,900     |
|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 | 3,075,000   | 92,250    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        | 815,000     | 24,450    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        | 11,080,000  | 332,400    |
| 주차장운영특별회계        | 3,870,000   | 116,100    |
| 대지보상특별회계         | 450,000     | 13,500     |
|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      | 23,000      | 690        |
|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98,680,000  | 2,960,400  |
|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| 11,630,000  | 348,900    |
|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| 327,000     | 9,810 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예산 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406,588천원으로 한다. (일반예비비 6,320,000천원,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 2,416,432천원, 내부유보금 4,670,156천원)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